

# 제1회 스타트업 비즈니스 경진대회 공모 요강

성남상공회의소는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한  
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여를 위해  
<제1회 스타트업 비즈니스 경진대회>를 진행합니다.  
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 능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 
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1. 모 개요

- (공 모 명) 제1회 스타트업 비즈니스 경진대회 지원사업
- (주 최) 성남상공회의소
- (지원목적) 스타트업의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한 투자유치, 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 및 자생력 제고
- (협약기간) 2025년 6월 ~ 12월(약 7개월)
- (신청대상)
  - 1순위) 성남시에 소재한 창업 5년 미만 스타트업
  - 2순위)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력 보유 경기도내 소재한 창업 5년 미만 스타트업
- (선정규모) 총 10개사
- (지원내용)

지원구분	세부 지원내용
1. 액셀러레이팅	○ 성장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지원 - 기업의 사업화 단계, BM, 아이템, 등 기업 진단 지원 - 기업의 BM, 아이템, 목표 시장 등 맞춤형 전문가 1:1 컨설팅 지원 - 기업경영, 인사·노무, 무역·관세, 법률, 특허, 세무·회계·재무 등 - 브랜딩 및 마케팅, 서비스 모델, 시장분석, 유통 확장 등
2. 경진대회	○ 성남상공회의소 제1회 비즈니스 경진대회 참가 지원 - 피치덱 및 피칭 컨설팅 지원 - IR 데모데이 참가 지원
3. 기타	○ 정부지원사업 및 기업경영 관련 후속 컨설팅 지원 ○ 투자유치, 오픈이노베이션, PoC 등 후속 연계 지원
4. 성과관리 (공통)	○ (성과관리) 지원사업 이전 및 종료 이후 목표 설정 및 측정 ○ (최종평가-경진대회)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금 지급 * 최대 1,000만 원 ~ 최소 100만 원

## II 신청 대상 및 요건

- (신청요건) 공고일 기준('25.05.26.(월)) 기준 기업 설립 후 5년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

<b>신청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설립연월일'이 2020.05.26.~2025.5.26. 이내인 기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에 의거, 개인사업자에서 포괄 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(동종전환 및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),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을 판단함</li> </ul> </li> <li>○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요건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### ○ (신청제외 대상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개시 후 5년 초과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신청 불가</li> <li>②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(기업)</li> </ul>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&lt;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</li> <li>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</li> </o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</li> <li>④ 회의소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⑤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</li> <li>⑥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</li> <li>⑦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 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, 단체)</li> <li>⑧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회의소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(기업, 단체)</li> <li>⑨ 중앙행정관서 및 지방자치단체,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,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</li> <li>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, 단체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&lt; ⑩항의 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</li> <li>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</li> <li>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</li> <li>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</li> </o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⑪ 휴·폐업 중인 기업</li> <li>⑫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갬블링·베타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</li> <li>⑬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기업)</li> </ul>
---	--

###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(신청·접수기간) 2025년 5월 26일(월) ~ 6월 13일(금) 18:00까지

※ `25.06.13.(금) 18시00분 정각 접수 자동 마감

※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.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○ (신청·접수방법) 이메일 온라인 제출

- 제출 이메일 주소) [artbong@pgvtrs.com](mailto:artbong@pgvtrs.com)

※ 이메일 온라인 제출 외 우편, 방문 접수·제출 불가

○ (제출서류)

제출서류		제출처
필수	<b>1. 지원신청서 양식 1부</b> ★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한글(HWP)파일로 제출 ★ 제공된 양식 외 사용, 한글(HWP)이 아닌 PDF, word 등 제출 시 접수 불가	이메일 붙임 첨부
	<b>2. 별첨자료 양식 1부</b> ★ 세부내용은 제공된 지원신청서 내 "별첨양식 모음" 참고	
	<b>3. 증빙서류</b>	
	<b>3-1. 사업자등록증</b> 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제출	
	<b>3-2. 법인등기부 등본</b> ★ 법인사업자만 해당 (말소포함,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) ★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, 포괄승계계약서 제출 필수	
	<b>3-3. 2023~2024년 재무제표</b> ★ `24년은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★ 재무제표 없을 시, 수지계산서 작성하여 제출 (수지계산서는 지원신청서 '별첨 4' 서식 활용 가능) ★ 2025년 설립기업은 설립 이후 재무현황으로 대체 가능	
선택	<b>4. 기타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, 수상실적(상장),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등 심의 참고 자료 등</b> ★ 기업소개서 및 포트폴리오는 표지 포함 10p 이하 PDF 파일로 제출	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`25.05.26.(월))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

○ (주의사항)

- 신청·접수 마감(`25.06.13.(금), 18:00) 기한 내 이메일 수신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

- 신청·접수 마감(`25.06.13.(금), 18:00) 이메일 송·수신 지연 등을 고려 사전 제출 필수

-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우편, 방문 접수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

## IV 정기업의 의무 및 역할

### ○ (신청 시)

- 신청기업은 e메일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, 접수 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
- 접수 마감까지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 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
- 심사는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
※ 기업 대표 직접 참여 및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, 첨부된 사유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필수
- 선정 후 공모신청서 세부 성과목표는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
- 본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수익 다각화, 파급효과 등 관련 정량·정성적 성과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

### ○ (지원 및 수행 일반)

- 선정기업의 사업 시작일은 성남상공회의소(이하 회의소)와의 협약체결일로 함
-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중도 포기 시 향후 성남상공회의소 주최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유사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행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,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및 지원사업 종료 이후 라도 협약 취소(사업 취소), 상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협약서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공모 신청 시 계획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-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회의소와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

### ○ (사업수행 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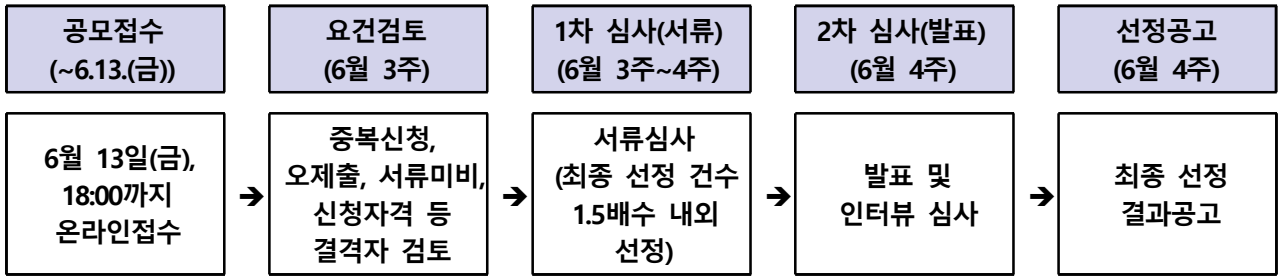
- 사업선정 이후 세부 사업계획 변경 시 회의소 및 운영사 협의 필수
- 사전에 회의소 및 운영사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불인정될 수 있음
- 사업선정 이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,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함
- 사업 기간(협약 기간)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

### ○ (사업 종료 후)
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후 이력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, 조사, 정보 제공 등의 회의소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 V 사 및 선정

○ (심사일정) 2025년 6월 3주 ~ 4주(예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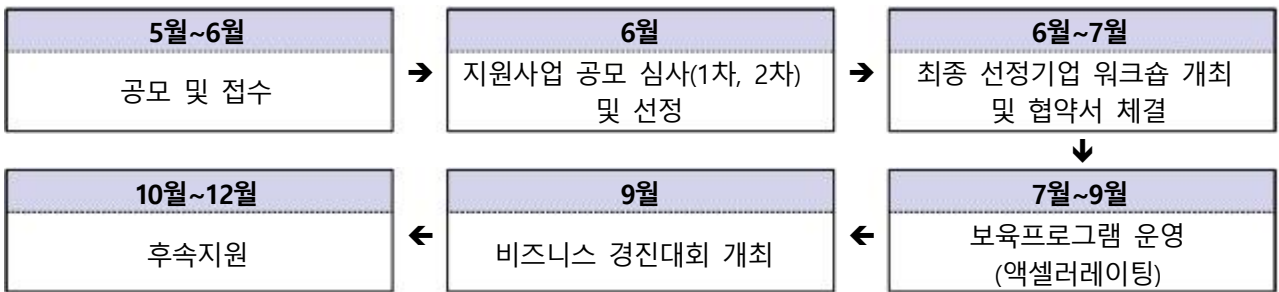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내·외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성남상공회의소 누리집과 심사 대상자 e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 예정

○ (심사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심사

※ 2차 심사(발표)의 경우 1차 심사 선정기업 대상으로 심사방법 및 일정 등 별도 공지 예정

○ (심사기준)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반 ①창업자 역량 및 전문성, ②사업 아이템의 필요성, 차별성, 현실성, 시장성, 성장가능성 ③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목표의 구체성, ④성남상공회의소 회원사간 상생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 □ 사업 운영 일정(안)

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VI 지원사업 문의 - 운영사

○ (문의처) (주)피지벤처스 창업육성본부 김\*수 선임

○ (문의방법)

- (유선) 010-4162-4445

※ 전화문의 : 평일(월~금) 10:00~17:00 중 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- (e-메일) artbong@pgvtrs.com

※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※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, 특허권, 초상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,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포상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